**정 관**

**유니온머티리얼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유니온머티리얼주식회사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Union Materials Corp.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자성재료와 그 응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일반요업 및 정밀요업 제품 등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전자재료,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4. 정밀요업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위 각호의 도소매 유통업
6. 위 각호의 국내외 무역업
7.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보관업
8. 전기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당 회사의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 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nionmaterials.com](http://www.ssy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1 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4,0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여 발생된 실권주와 신주배정에서 발생된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 주요 거래관계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며 이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제 2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액면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액면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6 조(주주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 후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3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 3 항에 의한 소집통지 및 제 4 항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 제 542 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 3 항과 제 4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ㆍ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26 조를 준용한다.

제 18 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주에 대하여 1 개로 한다.

제 20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23 조(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외의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23 조 1 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임원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사장이, 부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회사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 2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상담역,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감 사**

제 32 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당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안건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안건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3 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5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7 조(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 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39 조의 2(주식의 소각)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40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0 조의 2(중간 배당) ① 회사는 상법 제 462 조의 3에 의하여 사업년도 중 1 회에 한해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이익배당금은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 41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40 조의 배당금은 그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당 회사에 귀속한다.

제 42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또는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3 조(내규제정)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유니온머티리얼주식회사**

**제 정 : 서기 2000 년 06 월 29 일**

**개 정 : 서기 2000 년 07 월 20 일 (1 차)**

**개 정 : 서기 2002 년 03 월 30 일 (2 차)**

**개 정 : 서기 2003 년 02 월 28 일 (3 차)**

**개 정 : 서기 2007 년 03 월 09 일 (4 차)**

**개 정 : 서기 2008 년 12 월 23 일 (5 차)**

**개 정 : 서기 2009 년 02 월 27 일 (6 차)**

**개 정 : 서기 2011 년 03 월 11 일 (7 차)**

**개 정 : 서기 2013 년 03 월 22 일 (8 차)**

**개 정 : 서기 2016 년 03 월 29 일 (9 차)**

**개 정 : 서기 2017 년 03 월 14 일 (10차)**

**개 정 : 서기 2017 년 09 월 28 일 (11차)**

**개 정 : 서기 2019 년 03 월 28 일 (12차)**

**개 정 : 서기 2022 년 03 월 24 일 (13차)**